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9 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진선미・윤종군・임오경

이학영 • 한병도 • 남인순

한정애 · 김준혁 · 송재봉

이광희 · 김문수 · 장철민

정태호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·구조,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,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,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4조의5(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) ① 시·군·구긴급구조통 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제52조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1. 사상자의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
  - 2. 사상자의 응급처치 기록
  - 3. 사상자를 의료기관 및 임시영안소 등에 이송한 기록
  - 4.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
 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사상자의 이송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기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 진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

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재난피해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, 요 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9조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5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 통제단장의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	
법률 제20376호 재난 및		
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\_\_\_\_\_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 의5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협조 요

	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6의2. (생 략)	6의3. (현행 제6호의2와 같음)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